

#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하 남 시  
【하 수 도 과】

#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39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7. 02. .
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- 지방공기업 전환에 따른 하수도특별회계의 자주재원 확보 및 경영 적자에 따른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를 기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하수도 사용료 인상(안 별표1)

## 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## 4. 신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## 5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- 「하수도법」 제65조
- 「하남시 하수도 사용조례」 제16조

## 6.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## 7. 입법예고 결과

- 가. 입법예고기간 : 2016년 11월 21일 ~ 12월 12일(20일간)
- 나. 의견내용 : 의견없음

## 8. 부서협의 결과

- 가. 규제관련 협의사항 : 해당없음
- 나.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## 9. 참고사항 : 덧붙임

- 하수도사용료 신구조율 대비표

## 10. 관련부서 : 경기도 상하수과

##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.

부서명		하수도과
입안자	부서장 직위·성명	하수도과장 이철욱
	팀장 직위·성명	하수행정팀장 조수행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조수행 (790-5379)

[별표 1]

공공하수도 사용 요금표 <제16조 제2항>

업종별	사용량(m <sup>3</sup> /월)	적용시기 및 단가(원)		
		2017년 3월 고지분부터	2018년 1월 고지분부터	2019년 1월 고지분부터
가정용	0~20	152	222	325
	21~30	212	311	455
	31이상	351	513	751
일반용	1~100	272	398	583
	101~300	352	516	755
	301~1,000	488	715	1,046
	1,001~2,000	681	996	1,458
	2,001이상	1,360	1,990	2,912
대중탕용	0~1,000	625	914	1,338
	1,001~1,500	714	1,044	1,528
	1,501~2,000	804	1,176	1,721
	2,001이상	1,127	1,649	2,413

# 《관계법령 발췌서》

## 하수도법

제65조(사용료 등)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례로 그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.  
<개정 2016.1.27.>

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.

## 하남시 하수도 사용조례

제16조(공공하수도 사용료) ① 법 제65조에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(또는 하수처리구역)을 대상으로 징수 한다.

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와 별표 2의 하수도 업종별 구분표에 의하여 부과·징수 한다.

# 《참고사항》

## 신·구 요율대비표

업종	단계(m <sup>2</sup> )	2016년 현재	2017년	2018년	2019년	비고
가정용	1~20	104	152	222	325	
	21~30	145	212	311	455	
	31이상	240	351	513	751	
	소계	131	192	281	412	
일반용	1~100	186	272	398	583	
	101~300	241	352	516	755	
	301~1000	334	488	715	1,046	
	1001~2000	465	681	996	1,458	
	2001이상	930	1,360	1,990	2,912	
	소계	351	513	751	1,099	
대중용 탕용	0~1000	427	625	914	1,338	
	1001~1500	488	714	1,044	1,528	
	1501~2000	549	804	1,176	1,721	
	2001이상	771	1,127	1,649	2,413	
	소계	704	1,030	1,506	2,204	
합계		200	257	429	627	